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재난·안전분야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는 한편,

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한 세부적인 가산점 부여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·연구사 및 지도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.

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
2.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

제25조의3제1항 중 “제24조제1항”을 “제24조”로 한다.

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임기제 공무원	일반임기제	5급	6급	7급	8급	9급
	전문임기제	나급				
	시간선택제 임기제	가급	나급	다급	라급	마급
	한시임기제	5호	6호	7호	8호	9호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4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,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장관 협의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근무경력 가산점) ① (생략) ②·③ 삭제 ④ <u>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 <u>1.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: 1개월마다 0.1점</u> <u>2.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: 1개월마다 0.12점</u>	제24조(근무경력 가산점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④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·연구사 및 지도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.</u> <u>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</u> <u>2.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</u>

<u>3.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:</u> <u>1개월마다 0.15점</u> ⑤ 삭 제 ⑥・⑦ (생 략) 제25조의3(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) ① 제23조, <u>제24조제1항</u>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・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② (생 략)	<u><삭 제></u> ⑥・⑦ (현행과 같음) 제25조의3(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) ① ----- <u>제24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